

## 대학브랜드위원회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대학브랜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1.4.21., 2023.2.6.)

**제2조 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대학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  
(개정 2021.4.21., 2023.2.6.)

1. 본교의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
2. 본교 홍보 및 현안에 관한 사항(개정 2023.2.6.)
3. 대학 브랜드에 대한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(개정 2023.2.6.)
4.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 (위원회의 구성)** ① <삭제 2020. 9. 8.>

- ② 위원회는 대외협력부총장, 대외협력처장, 입학처장, 학생처장, 호서브랜드디자인센터장, 호서브랜드미디어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외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08.12., 2021.4.21., 2023.04.20.)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간사 1인을 둔다.(개정 2020. 9. 8., 2021.4.21., 2023.04.20.)
- ④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장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고, 외부인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21.4.21., 2023.2.6.)

**제4조 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(개정 2021.4.21.)

- ②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1.4.21., 2023.2.6.)

**제5조 (업적인정 및 수당지급)** ① 위원회는 대학 브랜드 인지도 향상 활동 및 언론매체에 기고(출연)하여 본교를 홍보한 자에게 해당 활동이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적을 인정할 수 있다.

- ② 업적을 인정하는 경우, 교원은 봉사분야 점수로 부여하며, 직원은 근무성적에 반영하거나 수당을 지급한다.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<별첨>대학 홍보실적 인정기준을 따른다.(개정 2023. 8. 11.)
- ③ 업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[조 신설 2023.2.6.]

**제6조 (회의소집)**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반수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소집한다.(개정 2015. 5. 1., 2021.4.21., 2023.2.6.)

**제7조 (회의록)** 위원회 사무는 대외협력홍보팀에서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한다.(개정 2021.4.21., 2023.2.6., 2023.04.20.)

**제8조 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23.2.6.)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(2015. 5. 1)

**제1조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** 조직개편에 따라 ‘전략기획팀’을 ‘홍보팀’으로 한다.

### 부 칙(2020.08.12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.

### 부 칙(2020. 9. 8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.

부 칙(2021.4.21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.

부 칙(2023. 2. 6.)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종전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시행 중인 교원, 직원의 업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3.4.20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종전의 규정·규칙 및 내부결재에 의해 시행된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조직개편에 따라 '홍보팀'을 '대외협력홍보팀'으로 한다.

부 칙(2023.8.11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단, 종전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시행 중인 교원, 직원의 업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<별첨> 대학 홍보실적 인정기준(신설 2023.2.6., 개정 2023.8.11.)

## 대학 홍보실적 인정기준

본 기준은 「대학브랜드위원회 규정」 제5조에 따라 본교 홍보실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

### ① 교원 업적점수 기준 (봉사업적)

구분	세부내용	점수	비고
언론매체	○ 방송출연, 신문기고 : 방송매체에 사회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거나, 신문 매체에 논평, 서평, 칼럼 등을 기고한 경우  《방송》 ・ 지상파 : MBC, SBS, KBS1, KBS2, EBS1, EBS2 ・ 종합편성채널 : JTBC, MBN, 채널A, TV조선 ・ 전국단위 보도전문채널 : YTN, 연합뉴스TV, MBN 등  《신문》 ・ 조선일보, 동아일보, 중앙일보, 매일경제, 한국경제, 경향신문, 한겨레신문, 서울신문, 문화일보, 한국일보, 머니투데이, 국민일보, 내일신문  《외신》 ・ 방송 : CNN(USA), FOX(USA), BBC(GBR), Euronews(FRA), France24(FRA), Deutsche Welle(DEU), RT(RUS), CCTV-4(CHN), CGTN(CHN), NHK(JPN), Al Jazeera(QAT), DD India(IND) ・ 신문 : The New York Times(USA), USA Today(USA), The Wall Street Journal(USA), The Washington Post(USA), The Guardian(GBR), Bild(DEU), Le Monde(FRA), The People's Daily(CHN), Yomiuri Shimbun(JPN), The Times of India(IND)	20점/회	・ 호서대 소속 표기  ・ 동일주제 1건만 인정 (지상파 방송은 매체별 인정)  ・ 방송출연 또는 방송에 출연해 다뤘던 주제가 기사화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 ・ 학부(과) 등이 보도된 경우, 대표교원 1인만 인정
	○ 전문가 인터뷰 : 신문, 잡지, 방송매체에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참여한 경우 ○ 인터넷 기사 : 일반보도자료 (포털사이트에서 '호서대'로 검색되어야 인정) ○ ISSN이 등록된 정기간행물에 논평, 서평, 칼럼 등을 기고한 경우	5점/회	
브랜드 활동	○ 브랜드 앰배서더에 위촉되어 대학을 홍보한 자 ・ 대외협력홍보팀에서 공지한 홍보 콘텐츠를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・ 인정매체 : 유튜브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네이버블로그, 트위터	별도심의	
기타	○ 대학브랜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대학 홍보활동	별도심의	

### ② 직원 근무평가 기준 : 교원 업적점수 기준에 준하여 사무처에서 결정